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6-07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6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가합527976 저작권 침해금지 등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가람
	담당변호사 서봉수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김태영, 하성화
변 론 종 결	2022. 3. 11.
판 결 선 고	2022. 4. 15.

주 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소스코드 파일을 제작, 판매, 양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피고는 피고의 본점, 지점, 영업소,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소스코드 파일을 폐기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2022. 4. 15.까지는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6-07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1, 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피고의 본점, 지점, 영업소, 사무실에서 보관[1]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소스코드 파일을 폐기하라.

2.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파일을 제작, 판매, 양도, 대여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2]

3. 피고가 제1, 2항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4.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1) 원고의 소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에는 별지 기재 각 소스코드의 보관 장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2)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 별지2에는 금지를 구하는 행위로 '별지 목록 기재 파일의 수정, 변경, 개작하는 행위, 어플리케이션 마켓에 업로드하는 행위를 포함한 일체의 배포, 복제 또는 전송하는 행위, 동일하거나 유사한 프로그램을 제작, 배포, 복제 또는 전송행위'를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위 수정, 변경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프로그램과 동일, 유사한 프로그램을 제작, 판매, 사용한 것을 침해행위로 주장하며 금지를 구하고 있으며, 위 별지2 목록에 기재한 각 행위는 제작, 판매, 양도, 대여, 사용을 법률용어로 표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별지2 목록에서 금지를 구하는 행위는 제작, 판매, 양도, 대여, 사용 행위로 특정한 것으로 선해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6-07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정보통신장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7. 7. 21. 인터넷 커뮤니티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솔루션개발팀(팀장 D)의 주도하에 2010. 10.경부터 2011. 9.경까지 72M/M[3]의 개발인력 및 약 5억 4,000만 원의 개발비용을 투입하여 2012년경 'E'(이하 '원고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였다. 원고는 이를 기초로 F일자 'G'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여 H일자 특허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는 2013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를 비롯하여 22개의 증권, 금융, 보험회사 등과 원고의 프로그램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라. 원고의 솔루션개발팀장 D은 2018. 8. 20.경 퇴사한 후 피고에 입사하였고, 그 뒤를 이어 원고의 솔루션개발팀 직원들(J, K, L, M, N, O, P, Q, R)도 원고에서 퇴사하고 피고에 입사하였다. D은 위와 같이 전직한 직후인 2018. 9. 19.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마. 피고는 2018. 9.경부터 'S'의 개발을 시작하여 2018. 12.경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프로그램을 각 완성하였고, 2019. 6.경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프로그램을 각 완성하였다[이하 피고가 제공하는 'S'을 '피고의 프로그램'이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프로그램을 순서대로 '피고의 2018년 앱 프로그램', '피고의 2018년 서버 프로그램', '피

3) Man of Month의 약자로서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에 소요된 인력의 작업량을 나타내는 단위이다. 예를 들어 1M/M은 1명의 인력이 1개월 동안 작업한 작업량을 의미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6-07

고의 2019년 앱 프로그램', '피고의 2019년 서버 프로그램'이라 한다]. 피고는 피고의 기술 또는 피고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고, I, T 주식회사와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는 2018. 9. 6. 원고와 계약금액 5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계약기간 2018. 8. 1.부터 2018. 11. 30.까지로 하여 'U'과 관련한 푸시 솔루션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8. 9.경 T 주식회사와 'V'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1.경 T 주식회사와 기존 계약의 계약기간을 2018. 9. 10.부터 2019. 4. 30.까지로, 용역수수료를 305,486,363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3) 피고는 2019. 7. 9. I과 공급가액 15,000,000원, 계약기간 2019. 7. 10.부터 2019. 9. 9.까지로 하여 'W' 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의 각 프로그램 개요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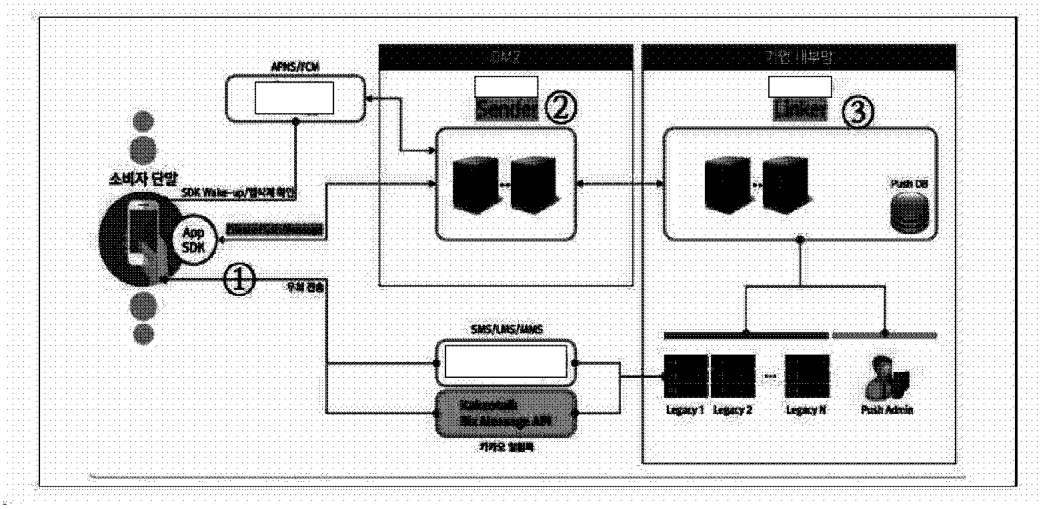
1) 푸시 솔루션은 X·Y을 통해 발송되는 푸시 메시지(각종 앱의 알림 메시지)를 서비스사의 서버에서 직접 발송해주는 솔루션이다. 일반적으로 서버-클라이언트 간에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대해 서버가 응답하는 관계가 형성된다. 그러나 푸시 서비스는 서버에서 주도적으로 클라이언트에 임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서버에는 메시지를 생성 및 관리하고 이를 다수의 클라이언트에 안정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기능이 제공되며, 클라이언트에는 메시지를 안정적으로 수신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알리기 위한 기능이 제공된다. 안드로이드에서는 이러한 푸시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GCM(Google Cloud Messaging) 등을 제공하고 있다.[4] 다만, 이와는

4) 현재는 FCM(Firebase Cloud Messaging)을 제공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6-07

별개로 보다 맞춤화된 서비스 구현을 위해 자체적인 메시징 서버를 중심으로 동작하는 Private 푸시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존재하며 원고와 피고의 프로그램은 이러한 Private 푸시 서비스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2) 원고와 피고의 각 프로그램 구성은 아래 그림과 같이 ① APP SDK(발송 모듈과 통신하는 모듈. 고객사의 앱과 함께 배포되어 사용자의 단말기에 설치됨), ② Sender 서버(사용자의 앱 SDK와 직접 통신하는 서버 모듈), ③ Linker 서버(고객사의 시스템과 연동하는 모듈. 이 모듈은 해당 고객사마다 새로 작업해야 하고, 그 소유권도 고객사에 귀속된다)로 이루어져 있다(아래 그림은 피고의 프로그램 구성을 도식화한 것인데 원고의 프로그램 구성도 동일하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Sender 서버'를 'FLK Push Server', 'Linker 서버'를 '업무 영역 서버'로 표현하고 있다. 이하 원고와 피고의 프로그램 중 APP SDK 프로그램을 '앱 프로그램', Sender 서버 프로그램 또는 FLK Push Server를 '서버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지칭한다).



사. 원고는 피고를 저작권법위반, 특허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D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저작권법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6-07

위반, 특허법위반 협의로 고소하였다. 검사는 2020. 3. 9. '양측 모두 제3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였으나, 비교대상 소스코드 원본을 제공받을 수 없어 원본이 아닌 한정된 범위에 대해서만 감정이 이루어진 점, 양측 어플리케이션 간에 성능의 차이를 보이는 점, 참고인의 진술 또한 양측 어플리케이션이 데이터베이스, 서버까지 다르다고 진술하는 점, I에 제공한 피고 어플리케이션의 수신율이 원고의 것보다 더 우수한 점, 타사의 푸시 알림 어플리케이션 또한 소스 코드 기록 중 일부 함수명과 진행 방식이 유사한 점을 볼 때, 일반적으로 개발에 사용되는 소스코드 진행방식, 함수명으로 보이며 이를 유사하다는 점만 갖고 피고와 D이 원고의 기술 방식을 도용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와 D의 각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2020. 6. 8. 항고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0호증, 을 제1, 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프로그램을 도용하여 피고의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저작권법 제123조 제1, 2항에 따라 침해의 정지, 예방 및 피고의 프로그램의 폐기를 구하고, 그에 대한 간접강제를 구하며,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의 프로그램은 유사하지 않고, 피고가 원고의 프로그램을 도용하지 않았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6-07

① 피고의 서버 프로그램은 원고의 서버 프로그램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개발되었다. 피고의 프로그램이 원고의 프로그램에 비해 수신율이 높다.

② 원고와 피고의 프로그램에서 동일한 오탈자가 존재하나 그 수가 적고 푸시 솔루션 기술과는 무관하므로 유사성 판단에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

③ 피고는 원고의 고객사인 I이 사용하던 원고의 프로그램을 피고의 프로그램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서버와 어플리케이션 간의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 원고의 앱 프로그램을 디컴파일하여 암복호화 키를 확보하고 이를 피고의 앱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프로그램에 동일한 암복호화 키가 존재한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의 프로그램을 도용했다고 봐서는 안 된다.

3.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프로그램의 저작물성 여부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6호). 컴퓨터프로그램과 같은 기능적 저작물은 해당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프로그램은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6-07

① 본래 푸시 서비스는 안드로이드에서 X 서버를 기본으로 하여 그 기능이 제공된다. 따라서 푸시 메시지의 하루 전송량 제한과 같이 푸시 서비스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② 원고의 프로그램은 위와 같은 제약이 없거나 완화된 형태로서 보다 다양한 기능으로 푸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③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원고 프로그램의 위와 같은 서비스 기능은 그 저작자의 정신적 노력의 산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프로그램과 구별이 가능하여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감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프로그램의 실질적 유사성

1) 관련 법리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는 것이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않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해진 것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등 참조).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의미하므로,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창작적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2828 판결 등 참조).

2) 원고와 피고의 프로그램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6-07

이 법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원고와 피고의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유사성에 관한 감정을 촉탁하였다. 감정은 원고가 제출한 '원고의 앱 프로그램', '원고의 서버 프로그램', '피고가 2018. 12. 13. 오픈마켓에 업로드한 앱 프로그램(이하 '피고의 2018년 오픈마켓 앱 프로그램'이라 한다)', '피고의 2018년 앱 프로그램', '피고의 2018년 서버 프로그램', '피고의 2019년 앱 프로그램', '피고의 2019년 서버 프로그램'의 각 소스코드를 대상으로 하여, 원고와 피고의 프로그램 사이의 오탈자가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여부, 암복호화 키가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여부, 실질적 유사성 여부 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감정 결과는 아래와 같다.

① 아래 표[5] 기재와 같이 원고의 앱 프로그램, 피고의 2018년 앱 프로그램에서 동일한 오탈자가 포함된 함수명(GetCongiguration 등)이 6건 발견되었고, 해당 함수명을 포함한 각 파일의 이름도 동일하다. 피고의 2018년 서버 프로그램, 2019년 앱 및 서버 프로그램에는 동일한 오탈자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본(앱-2018)		
오탈자가 포함된 함수명	원고본(앱)의 파일명	피고본(앱-2018)의 파일명
getConnectSesstionTimeOut	NetworkConstant.java	NetworkConstant.java
AgentControlInfomation	AgentControlInfomation.java	AgentControlInfomation.java
getPacakgeName	PushAgentEvent.java	PushAgentEvent.java
GetCongiguration	NativeManager.java	NativeManager.java
chcekDelayTime	NetworkStateMonitor.java	NetworkStateMonitor.java
checkWifiToDissconnectState	NetworkStateMonitor.java	NetworkStateMonitor.java
피고본(앱-2019)		
없음		
피고본(서-2018)		
없음		
피고본(서-2019)		
없음		

② 원고의 앱 프로그램에서는 아래 3개의 암복호화 키가 사용되었는데, 그 중

5) 표에 기재된 원고본(앱)은 원고의 앱 프로그램, 피고본(앱-2018)은 피고의 2018년 앱 프로그램을 나타낸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6-07

2개의 암복호화 키 전부(암복호화 키 2, 3) 및 암복호화 키 1과 매우 유사한 'Z'가 피고의 2018년 앱 프로그램에서 발견되었다.

암복호화 키 1: AA
암복호화 키 2: AB
암복호화 키 3: AC

③ 오픈소스를 제외한 원고와 피고의 앱 프로그램 사이의 유사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의 앱 프로그램과 피고의 2018년 앱 프로그램은 원본 기준으로 전체 68개의 파일 중 42개의 파일에서 50% 이상의 유사도가 측정되었다. 반면 원고의 앱 프로그램과 피고의 2019년 앱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파일의 유사도가 20% 이하로 확인되었다(피고의 2019년 앱 프로그램에서 원본 기준 유사도가 30% 이상인 파일들도 있었는데 그 파일들의 대부분은 소켓 관리, 암호화, 디버깅, 상수정의와 같이 유틸리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어서 푸시 메시지 기능과는 무관하였다).

원고의 앱 프로그램과 피고의 2018년 앱 프로그램 비교			
원고의 앱 프로그램 기준(원본)		피고의 2018년 앱 프로그램 기준(비교본)	
동일/유사 줄 수	2,257	동일/유사 줄 수	2,078
원본 줄 수	4,986	비교본 줄 수	5,312
유사도	45.3%	유사도	39.1%
원고의 앱 프로그램과 피고의 2019년 앱 프로그램 비교			
원고의 앱 프로그램 기준(원본)		피고의 2019년 앱 프로그램 기준(비교본)	
동일/유사 줄 수	738	동일/유사 줄 수	851
원본 줄 수	4,986	비교본 줄 수	6,817
유사도	14.8%	유사도	12.5%

④ 원고의 앱 프로그램과 피고의 2018년 앱 프로그램은 폴더 구조, 파일들의 배치가 상당히 유사하고, 그로 인하여 유사한 논리적 흐름으로 동작하는 것이 확인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6-07

었다. 반면 원고의 앱 프로그램과 피고의 2019년 앱 프로그램은 폴더 구조도 상이하고 논리적 흐름에 차이가 있었으며 서로 다른 지향점을 두고 설계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⑤ 감정 결과 오픈소스를 제외한 원고와 피고의 서버 프로그램 사이의 유사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의 서버 프로그램과 피고의 2018년 서버 프로그램 비교			
원고의 서버 프로그램 기준(원본)		피고의 2018년 서버 프로그램 기준(비교본)	
동일/유사 줄 수	1,070	동일/유사 줄 수	509
원본 줄 수	97,880	비교본 줄 수	16,213
유사도	1.1%	유사도	3.1%
원고의 서버 프로그램과 피고의 2019년 서버 프로그램 비교			
원고의 서버 프로그램 기준(원본)		피고의 2019년 서버 프로그램 기준(비교본)	
동일/유사 줄 수	1,070	동일/유사 줄 수	508
원본 줄 수	97,880	비교본 줄 수	16,261
유사도	1.1%	유사도	3.1%

⑥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앱 프로그램과 피고의 2018년 앱 프로그램은 실질적 유사성이 높고, 원고의 앱 프로그램과 피고의 2019년 앱 프로그램은 실질적 유사성이 낮으며, 서버 프로그램 사이에는 실질적 유사성이 낮다고 감정하였다.

3) 판단

가) 위 감정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앱 프로그램과 피고의 2018년 앱 프로그램 사이에 동일한 오탈자 및 암복호화 키가 발견된 점(피고는, 원고와 피고의 프로그램에서 발견된 오탈자의 수가 적고 해당 부분은 푸시 솔루션 기술과는 무관하므로 유사성 판단에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유사도 감정은 기능적 유사성이 아니라 소스코드의 텍스트 비교에 따른 유사성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6-07

을 감정하는 것이므로, 여러 개의 오탈자가 동일하게 발견되었다는 점도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② 위 각 프로그램의 폴더 구조, 파일들의 배치가 상당히 유사하고, 그로 인하여 유사한 논리적 흐름으로 동작하는 점, ③ 위 각 프로그램의 유사도가 39.1~45.3%로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앱 프로그램과 피고의 2018년 앱 프로그램 사이에는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프로그램에서 앱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으므로 원고의 프로그램 전체와 피고의 프로그램 전체의 유사성을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앱 프로그램과 서버 프로그램이 독립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개별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점, 앱 또는 서버 프로그램의 한 쪽을 그대로 두고 다른 한쪽만 교체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유사성 판단은 원고의 프로그램 전체와 피고의 프로그램 전체가 아니라 원고와 피고의 프로그램 중 앱 프로그램, 서버 프로그램 별로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위 감정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앱 프로그램과 피고의 2019년 앱 프로그램 사이의 유사도는 12.5~14.8%, 원고의 서버 프로그램과 피고의 2018년, 2019년 서버 프로그램 사이의 유사도는 1.1~3.1%로서 낮은 점, ② 위 각 프로그램 사이의 폴더 구조, 논리적 흐름에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앱 프로그램과 피고의 2019년 앱 프로그램 사이, 원고의 서버 프로그램과 피고의 2018년, 2019년 서버 프로그램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원고의 앱 프로그램과 피고의 2019년 앱 프로그램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6-07

JNI 코드의 유사성이 높고, 피고의 프로그램이 원고의 프로그램의 푸시 메시지 프로토콜을 참조하였기 때문에 피고의 프로그램 전부가 원고의 프로그램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앱 프로그램과 피고의 2019년 앱 프로그램에서 JNI 코드에 논리적 흐름에 있어 유사성이 존재하는 점, 피고가 원고의 푸시 메시지 프로토콜을 참조하여 피고의 2019년 앱 프로그램을 개발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2022. 1. 21.자 보완촉탁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앱 프로그램과 피고의 2019년 앱 프로그램은 JNI 파일 및 푸시 메시지 프로토콜과 관련하여 논리적 흐름에서 유사성이 존재하고, 피고는 그와 같은 논리적 흐름에 한하여 원고의 프로그램의 메시지 프로토콜을 참조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창작적 표현형식 즉, 푸시 메시지 프로토콜을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 명령어를 복제 또는 참조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의거관계

1)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의거관계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할 수 있고, 특히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이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의거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저작물 사이에 의거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는 서로 별개의 판단으로서, 전자의 판단에는 후자의 판단과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6-07

달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표현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등이 유사한지 여부도 함께 참작될 수 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55068 판결 참조).

2) 원고의 앱 프로그램과 피고의 2018년 앱 프로그램 사이에만 유사성이 인정되므로 위 각 앱 프로그램에 한정하여 의거관계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것과 같이 ① 원고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던 원고의 솔루션개발팀 직원 다수가 퇴사한 후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의 2018년 앱 프로그램을 개발한 점, ② 원고의 앱 프로그램과 피고의 2018년 앱 프로그램에 동일한 오탈자 및 암복호화 키가 존재하는 점, ③ 원고의 앱 프로그램과 피고의 2018년 앱 프로그램에 유사도가 높은 파일들이 다수 존재하고, 폴더 구조, 파일 배치, 논리적 흐름도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앱 프로그램을 토대로 피고의 2018년 앱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두 프로그램 사이에 의거관계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고객사인 I이 사용하던 원고의 프로그램을 피고의 프로그램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서버와 어플리케이션 간의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 원고의 앱 프로그램을 디컴파일하여 암복호화 키를 확보하고 이를 피고의 앱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암복호화 키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피고는 이 사건 답변서에서는 I으로부터 암복호화 키를 제공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원고가 2020. 7. 31.경 I에 그와 관련된 사실조회신청을 하자, 피고는 2020. 9. 11.자 준비서면에서는 원고의 앱 프로그램을 디컴파일하여 암복호화 키를 확보하였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6-07

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② 원고는 AD에 푸시 솔루션을 제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피고가 AD에 푸시 솔루션을 제공할 때 호환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의 2018년 오픈마켓 앱 프로그램(피고가 AD에 푸시 솔루션 제공하기 위해 오픈마켓에 업로드한 앱 프로그램)을 디컴파일한 소스코드에서 동일한 암복호화 키가 발견되었다.

③ 원고는 암복호화 키 값은 앱 프로그램과 서버 프로그램 사이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도 이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서버 프로그램을 유지한 상태로 피고의 앱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에만 원고의 프로그램의 암복호화 키 값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는 앱 프로그램만 별도로 개발하여 원고의 서버 프로그램과 연결한 것이 아니라 앱 및 서버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프로그램의 암복호화 키 값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소결

1) 피고의 2018년 앱 프로그램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인 원고의 앱 프로그램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고, 원고의 앱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제작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의 2018년 앱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앱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재산권인 복제권을 침해하였다.

2) 한편 피고의 2019년 앱 프로그램, 2018년, 2019년 서버 프로그램은 원고의 앱 프로그램, 서버 프로그램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에 관한 저작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2019년 앱 프로그램, 2018년, 2019년 서버 프로그램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금지, 예방, 폐기 청구 및 손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6-07

해배상 청구도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이하에서는 피고의 2018년 앱 프로그램에 대한 금지, 예방, 폐기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만 판단한다).

4. 금지 등 청구에 관한 판단(피고의 2018년 앱 프로그램)

가. 금지, 폐기 청구에 관한 판단

1) 저작권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을 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지는 피고가 과거에 침해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 소송에서 침해 여부를 다투는지,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에게 침해행위를 재개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야 한다.

앞서 본 것처럼 D 등이 원고를 퇴사하고 피고에 입사할 당시 피고는 설립된지 1년밖에 되지 않은 회사였는데 D은 피고에 입사한 직후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그 직후 원고의 앱 프로그램을 복제한 피고의 2018년 앱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판매한 점, 피고가 2018년 앱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점, 피고는 동종 영업을 계속하며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에서 침해여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침해의 금지를 명할 필요가 인정된다.

2) 저작권자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3조 제2항). 피고가 원고의 앱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여 피고의 2018년 앱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이를 활용하여 영업을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는 저작권법 제123조에 따라 피고가 피고의 본점, 지점, 영업소,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피고의 2018년 앱 프로그램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

다. 간접강제 청구에 관한 판단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6-07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금지 및 폐기를 명하는 이 사건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단기간 내에 위 의무를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간접강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2018년 앱 프로그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피고는 이 사건 2018년 앱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영업에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피고의 프로그램을 AE조합, AD, I에 제공하여 377,486,363원의 이익을 얻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위 이익액은 원고의 손해액으로 추정된다.

(2) 원고는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2019년 및 2020년 합계 235,877,128원 상당의 매출액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다.

(3) 푸시 솔루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앱 프로그램과 서버 프로그램은 불가분의 일체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앱 프로그램을 도용하여 얻은 이익 또는 원고가 입은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77,486,363원 또는 235,877,1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약 그중 피고의 2019년 앱 프로그램에 의한 손해배상만 인정된다고 한다면 원고의 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6-07

로그램에서 원고의 앱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중은 37%에 해당하므로 위 이익 377,486,363원 또는 손해액 235,877,128원의 37%를 원고의 손해로 인정하여야 한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손해 중 일부인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명시적 일부청구).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앱 프로그램과 유사하다고 판단된 부분은 피고의 2018년 앱 프로그램인데 피고의 2018년 앱 프로그램은 AD의 푸시 솔루션에만 제공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는 그에 관한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의 프로그램 중 원고의 앱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중은 소스코드 줄 수 기준으로 4.85%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손해배상액은 14,816,088원(= AD 푸시 솔루션 제공과 관련하여 피고가 얻은 용역수수료 305,486,363원 × 0.0485)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2) 판단

가)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에 의한 손해액 인정 여부

(1) 피고가 2018. 9. 6. 원고와 계약금액 57,000,000원으로 하여 'U'과 관련한 푸시 솔루션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 2019. 7. 9. I과 공급가액 15,000,000원으로 하여 'W'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을 제1, 2, 5,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또는 I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얻은 이익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U'과 관련한 원고의 푸시 솔루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6-07

고와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피고의 2018년 앱 프로그램을 AE조합에 제공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② 피고와 I 사이의 'W' 계약은 2019. 7. 9. 체결되었는데, 피고의 2019년 앱 프로그램은 그 이전인 2019. 6.경 개발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I에 피고의 2019년 앱 프로그램이 아닌 피고의 2018년 앱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한편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AD에 피고의 2018년 앱 프로그램이 포함된 푸시 솔루션을 제공하여 그 대가로 305,486,363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앱 프로그램과 서버 프로그램이 독립적으로 작동을 하고 그 기능도 상이한 점, 피고의 프로그램에서 앱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서버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큰 점, 앱 프로그램과 서버 프로그램의 가치를 정확히 구분하여 산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피고의 2018년 앱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이익을 정확히 산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의한 손해액 인정 여부

원고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의한 손해액을 주장하나, 그 주장이 명확하지 않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고가 주장하는 실제 손해액의 인정 여부(민법 제750조)

원고는, 원고의 'Push 솔루션 구축 및 개발' 업무와 관련된 매출이 2018년 414,604,450원에서 2019년 258,783,406원, 2020년 218,590,916원으로 각 감소하였고, 원고의 'Push 유지보수' 업무와 관련된 매출이 2018년 149,354,552원에서 2019년 148,704,889원, 2020년 108,841,295원으로 각 감소하였으므로, 그와 같이 감소한 매출액 합계 235,877,128원이 원고의 손해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6-07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로 235,877,128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의 매출 감소는 푸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경쟁 업체로 인한 기존 고객사의 이탈, 신규 고객사의 유치 감소, 관리비용(인건비, 광고비 등)의 증가 등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의 경쟁 업체는 피고 이외에도 다수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로지 피고로 인하여 위와 같이 매출이 감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는 피고의 2018년 앱 프로그램에 의한 것인데 원고의 매출 감소액 중 그로 인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

라)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손해액 산정

민법 제750조, 저작권법 제125조 제1, 2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60,000,000원으로 인정한다.

① 피고가 AD에 피고의 2018년 앱 프로그램이 포함된 푸시 솔루션을 제공하고 용역수수료로 305,486,363원을 받았고, 피고의 2018년 앱 및 서버 프로그램 중 앱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픈소스를 제외한 소스코드 줄 수를 기준으로 24.58%이다.

② 푸시 솔루션 프로그램 중 앱 프로그램과 서버 프로그램이 갖는 가치를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6-07

구분하여 평가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소스코드의 줄 수의 비율만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두 프로그램은 모두 푸시 솔루션 프로그램을 운용하는데 필수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서버 프로그램의 기능적 가치가 앱 프로그램보다 높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양적 비율도 이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

③ 원고는 원고의 푸시 솔루션 개발에 소요된 투입 원가를 기준으로 앱 프로그램의 비중이 37%라고 주장하나, 갑 제2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원고의 앱 프로그램과 피고의 2018년 앱 프로그램의 유사성의 정도가 원고의 앱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45.3%, 피고의 위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39.1%이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침해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 4.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권오석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6-07

판사 여태곤

판사 김봉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6-07

별지

목 록

1. 2018. 12. AF 프로그램 소스코드(AG)
2. 2018. 12. AF 프로그램 소스코드(AH)
3. 2019. 06. AF 프로그램 소스코드(AG)
4. 2019. 06. AF 프로그램 소스코드(AH). 끝.